

예산총칙

제1조 :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280,913,153	8,427,395
1. 일반회계	274,319,765	8,229,593
2. 특별회계	6,593,388	197,802
의료보호기금	672,890	20,187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818,229	24,547
주차장	3,980,760	119,423
주거환경개선사업	194,082	5,822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545,100	16,353
기반시설사업	90,500	2,715
지하수관리	291,827	8,755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9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811,109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